일본의 제3섹터 현황과 개혁방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current status of Japanese third Sector and the direction for reform thereof

최 현 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부교수 - 주저자)

Abstract

Hyun-Il Choi

Recently, 40% of corporate in Japanese third Sector recorded deficit and this phenomena became a social concern, giving considerable burden to the municipalities' treasury. Japanese Government is pouring numerous efforts for fundamental reform of the third Sector to solve such problem since mid 2000s. For sustainable reform of the third Sectoretc. the Government has enacted Municipal Treasury Act and is pushing for concentrated reforms for five years commencing from 2009 until 2013. Similar phenomena with the worsening management of the Third Sector in Japan are occurring in Korea that adopted the Japanese style legal system of municipal public corporations, and prompt responding measures are required to Korea. This study researched on the problem and reform measures on the third Sector, which emerged as the social concern in Korea. Based on the status of Japanese third Sector, this study reviews the problem and reform direction in the third Sector, and accordingly suggests the implications thereof on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Korean third Sector.

주제어: 제3섹터,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근본적 개혁

Keywords: the third Sectoretc, local government, the social concern, fundamental reform

I. 서 론

일본에서는 제3섹터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통용되고 있는 제3섹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말하는 'the 3rd Sector'와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말하는 'the 3rd Sector'는 '정부나 민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영리조직(NPO: Non Profit Organization)'을 말하지만, 일본에서 제3섹터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관계기관(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사업체'의 의미로 쓰여 지고 있다. 즉, 공사 공동출자의 민법법인・상법법인을 제3섹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지역개발을 비롯하여, 철도, 정보・통신, 지역의 산업진흥, 사회복지, 레저 등의 공공사업, 공공복지 등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일본에서 제3섹터의 개념이 불확실한 것은 제3섹터 이외에 '외곽단체',[1] '지방공사'[2] 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들 개념과 제3섹터의 개념을 명확히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에도 원인이다(丸山康人, 2006).

한편, 2013년 4월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제3섹터 경영현황에 따르면 전국 7,041개 법인 중 40.4%에 해당하는 2,845개 법인이 적자였다. 전국 7,041개 법인의 구성을 보면 제3섹터 5,916개, 지방3공사 1,031개, 지방독립행정법인[3] 94개이다. 이들 법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총액은 8조 5,320억엔이며, 이 중 5조 7,126억엔은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상 또는 채무보증을 해야 하는 차입금이다. 더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제3섹터나 지방공사 2,071개 법인 중 49.1%에 해당하는 1,016개 법인이 사업청산 등 파탄을 막기 위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상 또는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제3섹터나 지방3공사가 경영파탄이 일어나고,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을 재촉 당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 정부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일본의 제3섹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곽단체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간섭과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경영이 악화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일본 정부는

---

1) 외곽단체(外廓團體)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출연이나 인적지원 등의 형태로 관여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며, 비 출자 단체라 하더라도 업무위탁, 업무내용 등에서 지방자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체도 포함한다. 즉, 출자, 인간관계, 지배관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하는 모든 조직을 외곽단체라고 한다.

2) 지방공사는 일반적으로 공공용지의 취득과 조성, 주택의 건설과 관리, 유로도로의 건설과 관리, 농림어업의 진흥 및 관광사업의 개발 등을 위해 지방공공단체가 출자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사업경영에 지방공공단체의 영향력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지방3공사라고도 불린다.

3) 지방독립행정법인은 주민생활이나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의 안정 등 공공상의 관점에서 그 지역에 꼭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무나 사업 가운데 지방공공단체가 직접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것 중에서 민간에 맡기면 적절히 추진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독립행정법인법의 규정에 근거해 지방공공단체가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9년부터 제3섹터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 같은 제3섹터의 경영부실에 따른 재정위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8년 9월 말 현재 지방공기업형 제3섹터는 28개 법인이 운영 중이며, 2007년 결산결과 13개가 적자 경영을 하여 총 12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즉, 제3섹터의 상당한 기관이 적자 경영상태(13개)이며, 대부분 자본금이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영세법인(17개)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기대효과가 미미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여영현 외, 2010).

이처럼 제3섹터가 발달한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방공기업 법령체계를 받아들인 우리나라에서도 제3섹터의 경영 악화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일본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제3섹터의 문제와 개혁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일본의 제3섹터 현황을 바탕으로 제3섹터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제3섹터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제3섹터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자료가 충분치 않다. 따라서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연구된 제3섹터와 관련된 논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명수(2012)는 시민참여형 제3섹터라 할 수 있는 일본 세타가야구의 (재)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즈쿠리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지방공기업 개선을 위한 시사점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제3섹터는 부실한 경영으로, 서양의 제3섹터는 양극화와 시장지향적 개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동경의 세타가야구는 새로운 대안으로 시민참여형 제3섹터를 제시하였다. 즉, 지역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트러스트 마치즈쿠리는 이를 집행한다는 것이다. 이 트러스트 마치즈쿠리의 운영비용은 공공의 풍부한 지원금 외에 일부를 주민들이 직접 출자하여 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이 시민참여형 제3섹터 구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재원의 규모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어떤 영역을 열어 주는 것이 좋은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첫째, 시민참여형 제3섹터 구성 시 재원의 규모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시민들에게 맡길 과업에 관심을 둘 것, 둘째, 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때 참여의 결과를 보장해줄 것, 셋째,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출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이끌어 내어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투명화 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만 논문의 주장이 한국의 환경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 된다.

노대명(2010)은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제3섹터의 주요한 역할이 과거에는 권리옹호에 있었다면, 지난 10년간은 사회서비스제공과 일자리 창출에 있었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3섹터 조직들은 정체성(자발성・자율성・연대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3섹터의 변천과정, 현재의 상황,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육성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각 국가들의 제3섹터 현황과 지원정책의 비교, 한국의 제3섹터 현황과 문제점 분석 등에 있어서 정보와 자료의 제약으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여영현 외(2010)는 제3섹터 운영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연구에서 민관 공동출자기관 가운데 지방공기업형 제3섹터를 중심으로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3섹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자료인 출자비율에 따른 분류 외에 최대주주 여부, 검사・지도권 보유여부, 외부감사에 의한 분류를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시도는 바로 제3섹터의 지배구조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형 제3섹터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제3섹터의 사업에 대한 특성을 배제하고 지분율의 기준만으로 구분하거나 설립 당시의 지분율이 변동되어도 동일한 지배구조나 내・외부 통제를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기타 행정보완형 제3섹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赤井伸郎(2003)은 제3섹터의 경영악화의 요인분석에서 최근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법법인인 관광・레저 분야의 제3섹터 경역악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거시적 경기악화가 대규모 개발을 추진한 법인의 경영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관과 민의 책임분담의 모호성 때문에 관과 민의 노력이 저하되고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에 있는 수요경쟁(동업자와의 경쟁)과 실업이 많은 지역에서 고용창출을 위해 설립된 것이 경영악화의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역에 상존하는 정치적 압력을 통한 과대투자, 정보공개의 준비부족으로 책임 결여, 리조트법 등의 거시정책에 의한 비효율적 설립이 경영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하였다.

深澤映司(2005)는 제3섹터의 경영악화요인과 지역경제에서 제3섹터의 경영악화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 경제・산업의 진흥과 주민생활의 향상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면에서 어느 정도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 빌린 공적자금이 부채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은 순수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와 PFI[4]방식 등에 따라 채택된 경우에

---

4) 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약자로 민간투자개발사업. 즉, 도로, 철도 등의 건설과 운영, 유지관리, 사업자금의 도입 등 전 과정을 건설회사 등 민간 기업에 맡기는 새로운 사회간접자본 구축방식으로서 1992년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이 민간자금주도의 구축방식은 단순한 민자 유치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자금 동원이 복합적이어서 고도로 능률적인 금융부문의 뒷받침이 있어야 실현 가능한 공공사업방식이다.

만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제3섹터가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사업을 위해 자금을 빌리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제3섹터 연구는 주로 제3섹터의 형태와 제도 및 효율화 방안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제3섹터의 경영악화에 대한 요인분석과 정책대안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제3섹터의 도입과 운영의 역사가 짧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의 연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제3섹터가 도입되어 장기간 운영된 결과 나타난 경영악화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일본의 제3섹터 개념과 분류

1. 제3섹터의 개념

일본에서 사용되는 제3섹터는 미국의 제3섹터(the third sector)개념에서 유래하였으나, 법적으로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첫째, 사회자본정비의 긴급성, 사업의 효율화, 민간자금의 활용이라는 기술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진 관민협조 사업방식의 총괄 개념이지만 아직까지 확립된 정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제3섹터를 공공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경영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공사, 협회, 기금, 주식회사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민법・상법에 근거한 법인으로 하나의 자치단체가 25%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인 관과 민간사업자와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개발과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 공사 혼합출자의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공동출자에 의한 민법 및 상법인으로 규정하기도 한다(寺尾光洋, 1988).

丸山康人(2006)은 일본에서 통용되고 있는 제3섹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말하는 'the 3rd Sector'와는 근본적으로 그 개념이 다르다. 이 'the 3rd Sector'는 '정부나 민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영리조직(NPO: Non Profit Organization)'을 말한다. 제3섹터에 대한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관계기관(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사업체' 를 가르치는 의미로 쓰여 지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공사 공동출자의 민법법인・상법법인을 제3섹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지역개발을 비롯하여, 철도, 정보・통신, 지역의 산업진흥, 사회복지, 레저 등의 공공사업, 공공복지 등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종수(2009)는 제3섹터는 제1섹터(1st sector)인 공공부문과 제2섹터(2nd sector)인 민간부문의 공통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본래 제3섹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제3의 부문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해 설립한 특수법인을 지칭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며,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를 가리키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한편, 레빗(Theodore Levitt, 1973)은 제3섹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측에서 외면당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화된 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에치오니(Amitai Etzioni)로 대표되는 수렴(convergence)적 입장은 제3섹터를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공공부문의 공익이나 책임성과 결합시키려는 메커니즘으로 파악하였다.

여영현(2010)은 제3섹터의 개념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1섹터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관계기관 등의 행정부문과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공동출자한 사업의 형태를 지칭하는 일본과 한국의 시각과 정부와 시장의 공제영역(vacant area)에서 활동하는 자발적, 공익적 조직으로 보는 미국적 시각이 있다. 이러한 제3섹터의 개념은 법률상 개념도 학문상 개념도 아니라 논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만 공공부문이 공공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 공급하는 소위 제3섹터라는 용어는 1970년대 초부터 미국과 일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안용식, 2000: 이성복, 1995).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섹터의 개념은 미국적 견해 NPO(Non Profit Organization)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다수가 일본처럼 공사 혼합기업 또는 민관공동 출자기업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그 범위에 있어서도 학자마다 다르다(김종성, 2003:327).

이처럼 제3섹터에 대한 개념이 국가마다 다르고, 학자마다 달라 명확하지 않지만 정부와 시장의 공제영역(vacant area)에서 활동하는 자발적, 공익적 조직으로 보는 미국적 시각보다는 제1섹터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관계기관 등의 행정부문과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공동출자한 사업의 형태를 지칭하는 일본적 시각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제3섹터의 분류와 업무

제3섹터는 매우 다양하게 분류된다. 설립목적에 따라 지역개발주체로서의 제3섹터, 민영화 수단으로서의 제3섹터, 서비스공급의 광역화를 위한 제3섹터, 공영수단으로서의 제3섹터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자산내용에 따라 하드계(자본집약적 제3섹터)와 소프트계(지식집약적 제3섹터)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수익성 정도에 따라 현상유지적 제3섹터와 성장지향적 제3섹터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3섹터의 활용 형태에 따라 기초적 기반형성형, 신산업 기반형성형, 산업적 형성형, 중핵산업 형성

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사용목적에 따라 지역개발형, 기업경영형, 시설운영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표 1〉 제3섹터의 유형

구 분	사업목적	경영체질	사업기능	사 례
지역개발형	지역개발형 지역진흥형	공공주도형 관민공동형	자금조달형 프로모우터형	공항, 도로, 부두건설, 리조트, 관광개발 등
기업경영형	사업추진형 기획개발형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이해조정형 노하우활용형	재개발빌딩, 교통터미널건설, 특산품개발, 정보서비스산업 등
시설운영형	시설위탁형 공익창출형	관민공동형 민간주도형	경비절감형 공사결합형	시설관리, 철도경영, 신체장애자공장, 스포츠・문화시설 등

자료: 高寄昇三. (1991).「외곽단체의 경영」. 學陽書房.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출자 또는 출연한 공사 혼합기업, 즉 제3섹터는 지방공사에 속한다. 한국에서 지방공사가 공법에 기초한 것만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일본의 지방공사는 사법상의 지방공사와 공법상의 지방공사로 분류되고, 각각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다. 여기서 사법상의 지방공사를 제3섹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제3섹터의 조직형태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사단법인, 상법상의 주식회사·유한회사로 분류되고 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로 최저 25% 이상, 최고 75% 이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방에 핵이 되는 기업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의 수익성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최저 25% 이상, 최고 50% 이하로 출자하고, 지방에 핵이 되는 기업이 없는 경우 또는 공익성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최저 50% 이상, 최고 75% 이하로 출자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해당 지역에 경영실적이 우수한 기업이 있을 경우 그 기업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런 기업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총무성은 제3섹터의 업무분야를 아래 표와 같이 1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5)]

5) 유훈 외. (2010).「공기업론」. 법문사

〈표 2〉 제3섹터의 업무분야 및 업무 내용

업 무 분 야	업 무 내 용
지역・도시개발	공공시설, 주택용지・공업용지의 취득・조성・처분 및 도시개발 등 도시정비
주택・도시서비스	주택의 임대・분양, 택지분양 및 단지 서비스
관광・레저	관광・레크레이션 시설의 정비・운영
농림수산	농지 등의 취득・조성・처분
상공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대여・융자・경영지도
사회복지・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시설의 관리
생활위생	폐기물처리, 위생시설관리, 위생검사
운송・도로	유료도로건설・관리, 교통사업, 터미널 경영
교육・문화	과학진흥사업, 사회교육시설 관리, 육영사업, 스포츠진흥, 문화재 보호
공해・환경보전	공해관계의 조사분석, 산업폐기물의 처리, 자연보호사업
정보처리	전자계산센터, 유통업무서비스센터
국제교류	국제교류협회, 국제교류기금
기 타	청사관리, 소방, 방송, 싱크뱅크

자료: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Ⅳ. 일본의 제3섹터 현황

최근 일본의 제3섹터 현황을 법인의 특징과 추이, 설립현황, 업무분야별 특징, 출자현황, 경영현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특징과 추이

먼저, 제3섹터 법인 수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2012년 현재 일본의 총 법인 수는 8,308개 이며, 이중 제3섹터 7,181개(86.4%), 지방3공사[6] 1,033개(12.4%), 지방독립행정법인 94개(1.1%)로 제3섹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제3섹터는 사단법인・재단법인 3,616개(43.5%), 회사법법인 3,565개(42.9%)를 차지하고 있어, 사단법인・재단법인 및 회사법법인이 대부분이다. 또한 지방3공사는 지방주택공급공사 51개(0.6%), 지방도로공사 38개(0.5%), 토지개발공사 944개(11.4%)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4%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방독립행정법인은 94개로 전체에서 차지하

6)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해 설립한 토지개발공사, 지방주택공급공사, 지방도로공사 3법인을 말한다.

는 비율은 1.1%이다. 한편, 2012년 현재 총 법인 수는 8,308개는 전년도인 2011년도 총 법인 수 8,484개에 비해 176개 법인이 감소한 수치이다. 법인 수는 주식회사, 재단법인의 증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오다가 199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재단법인의 감소추세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 3〉 제3섹터의 법인 수

구 분		도도부현	지정도시	시구정촌	합계 (비율%)	전년도합계 (비율%)
제3섹타	합 계	1,970	553	4,658	7,181(86.4)	7,317(86.2)
	사단법인・재단법인	1,398	303	1,915	3,616(43.5)	3,723(43.9)
	회사법 법인	572	250	2,743	3,565(42.9)	3,594(42.4)
지방3공사	합 계	117	31	885	1,033(12.4)	1,084(12.8)
	지방주택 공급공사	41	10	0	51(0.6)	52(0.6)
	지방도로공사	35	3	0	38(0.5)	40(0.5)
	토지개발공사	41	18	885	944(11.4)	992(11.7)
지방독립행정법인		62	11	21	94(1.1)	83(1.0)
합 계		2,149	595	5,564	8,308(100)	8,484(100)

자료: 일본 총무성. (2012. 12). 제3섹타의 현황에 관한 조사결과

한편, 최근 10년간 총 법인 수의 추이를 보면 2003년도 10,111개에서 2012년도 8,308개로 1,803개가 감소하였다. 이 중 제3섹터는 8,457개에서 7,181개로 1,276개가 감소하였으며, 지방3공사는 1,654개에서 1,033개로 621개가 감소하였다. 반면 지방독립행정법인은 제도도입 첫해인 2006년 8개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2년에는 94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제3섹터 중 사단법인・재단법인은 2003년 4,636개에서 2012년 3,616개로 1,020개 감소하였으며, 회사법법인은 3,821개에서 3,565개로 256개 감소하였다.

〈표 4〉 최근 10년간 법인 수 추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제3섹터	합 계	8,457	8,357	8,217	7,973	7,775	7,686	7,535	7,439	7,317	7,181
	사단법인・재단법인	4,636	4,534	4,390	4,183	4,051	3,973	3,863	3,813	3,723	3,616
	회사법법인	3,821	3,823	3,827	3,790	3,724	3,713	3,672	3,626	3,594	3,565
지방3공사		1,654	1,590	1,392	1,227	1,205	1,175	1,150	1,117	1,084	1,033
지방독립행정법인		-	-	-	8	27	38	44	62	83	94
합 계		10,111	9,947	9,609	9,208	9,007	8,899	8,729	8,618	8,484	8,308

자료: 일본 총무성. (2012. 12). 제3섹타의 현황에 관한 조사결과

2. 제3섹터의 설립현황

제3섹터의 연차별 설립건수를 보면 2000년 201개에서 2011년 44개로 감소 추세에 있다. 주식회사가 2000년 118개에서 2011년 17개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재단법인이 50개에서 12개로 감소하였다. 반면, 지방독립행정법인은 2004년 처음으로 1개가 설립된 이후 2011년에는 11개로 증가하였다. 지방3공사는 2010년, 2011년 연속 설립건수가 0이다. 2011년 신설된 제3섹터 법인 수 44개는 사회복지・보건의료 10개, 교육・문화 10개, 농림수산 7개, 관광・레저 6개, 상공 5개, 지역・도시개발 1개, 기타 5개이며, 사회복지・보건의료와 교육・문화 분야의 법인수가 많아지고 있다.

〈표 5〉 연차별 설립 수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단법인	6	11	4	4	3	0	2	1	1	6	4	3
재단법인	50	33	23	23	12	21	7	9	2	15	7	12
주식회사	118	78	96	66	68	48	33	36	30	27	23	17
기타 주식회사	26	23	19	26	17	17	6	1	1	1	1	1
지방3공사	1	2	1	0	0	7	5	0	1	8	0	0
지방독립행정법인	-	-	-	-	1	7	19	11	5	15	21	11
합계	201	147	143	119	101	100	72	58	40	72	56	44

자료: 일본 총무성. (2012. 12). 제3섹타의 현황에 관한 조사결과

3. 제3섹터의 업무분야별 특징

제3섹터의 업무분야별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3섹터의 업무분야는 총무성에서 13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데, 2012년도 통계를 보면, 지역・도시개발이 가장 많은 1,430법인(17.2%)이고, 다음으로 농림수산 1,279법인(15.4%), 관광・레져 1,204법인(14.5%)의 순이다. 정보처리, 운송・도로, 관광・레저 분야에서는 주식회사의 비율이 높고, 국제교류, 공해・자연환경,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사단법인・재단법인의 비율이 높다. 한편, 2006년도 제3섹터의 업무분야가 농림수산, 관광・레저, 교육・문화 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몇 년간 도시・지역개발의 업무분야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도에도 관광・레저, 상공, 운수도로, 정보처리 분야는 주식회사의 비중이 높고, 지역・도시개발, 교육・문화, 사회복지・보건의료, 생활위생, 국제교류 분야는 재단법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 제3섹터의 업무분야별 법인 수

업무분야	2006년	2011년(비율)	2012년(비율)
지역・도시개발	530	1,497(17.6%)	1,430(17.2%)
농림수산	1,410	1,300(15.3%)	1,279(15.4%)
관광・레저	1,375	1,226(14.5%)	1,204(14.5%)
교육・문화	1,179	1,160(13.7%)	1,140(13.7%)
상공	753	723(8.5%)	726(8.7%)
사회복지・보건의료	527	465(5.5%)	425(5.4%)
운수도로	459	509(6.0%)	497(6.0%)
생활위생	308	285(3.4%)	273(3.3%)
주택・도시서비스	116	168(2.0%)	160(1.9%)
국제교류	120	114(1.3%)	109(1.3%)
정보처리	108	94(1.1%)	90(1.1%)
공해・환경보전	79	74(0.9%)	74(0.9%)
기타	1009	869(10.2%)	874(10.5%)
합계	7,973	8,484(100%)	8,308(100%)

자료: 유훈 외.(2010).「공기업론」. 법문사 및 일본 총무성. (2012. 12). 제3섹타의 현황에 관한 조사결과에서 재작성

4. 제3섹터의 출자현황

2012년 현재 제3섹터에 대한 출자액은 4조 1111억엔으로 이는 출자총액 6조 5,040억엔의 69.8% 이다. 법인 구분별 출자총액은 사단법인・재단법인 1조 1,597억엔, 회사법인 2조 9,517억엔이다. 이 중 지방공공단체로부터의 출자액은 사단법인・재단법인 7,911억엔(68.2%), 회사법법인은 1조 3,556억엔(45.9%)이다. 또한 민간 등의 출자액은 사단법인・재단법인 3,685억엔, 회사법법인 1조 5,961억엔이다.

〈표 7〉 제3섹터의 출자현황

(단위: 백만엔)

구분	출자단체	출자총액(A)			법인수 (C)	1법인당 평균출자액 (A/C)	1법인당 평균공공단체출자액 (B/C)
		합 계	자치단체 등 출자액(B)	민간 등 출자액			
제3 섹타	도도부현	2,578,228	1,427,442	1,150,786	1,970	1,309	725
	지정도시	739,618	372,124	367,495	553	1,337	673
	시구정촌	793,651	347,213	446,438	4,658	170	75
	계	4,111,498	2,146,778	1,964,719	7,181	573	299
지방 공사	도도부현	1,095,791	1,095,791	0	117	9,366	9,366
	지정도시	54,785	54,785	0	31	1,767	1,767
	시구정촌	6,610	6,610	0	885	7	7
	계	1,157,187	1,157,187	0	1,033	1,121	1,121
지방 독립 행정 법인	도도부현	921,451	921,451	0	62	14,862	14,862
	지정도시	249,161	249,161	0	11	22,651	22,651
	시구정촌	64,758	64,758	0	21	3,084	3,084
	계	1,235,370	1,235,370	0	94	13,142	13,142
합계	도도부현	4,595,471	3,444,684	1,150,786	2,149	2,138	1,603
	지정도시	1,043,565	676,070	367,495	595	1,754	1,136
	시구정촌	865,019	418,581	446,438	5,564	155	75
	계	6,504,055	4,538,336	1,964,719	8,308	783	546

자료: 일본 총무성. (2012. 12). 제3섹타의 현황에 관한 조사결과

5. 제3섹터의 경영현황

2012년 경영현황은 보면 전체 7,041개 법인 가운데 흑자법인은 4,196(59.6%), 적자법인은 2,845개(40.4%)에 달한다. 제3섹터는 5,916개 법인 중 흑자법인이 3,555개 60.1% 이며, 적자법인이 2,361개 39,9% 이다. 제3공사는 1,031개 법인 중 흑자 557개 54.0%, 적자법인 474개 46.0% 이다. 지방독립행정법인은 94개 법인 중 흑자법인 89.4%, 적자법인 10.6%이다. 이 통계를 보면 지방독립행정법인은 제3섹터나 제3공사보다 흑자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제3섹터 경영현황

(단위: 백만엔)

구 분		2011년			2012년		
		법인수	구성비	금액	법인수	구성비	금액
제3섹터	합 계	6,023		98.479	5,916		119,588
	흑자법인	3,677	61.0%	182,760	3,555	60.1%	208,778
	적자법인	2,346	39.0%	△84,281	2,361	39,9%	△89,190
제3공사	합계	1,081		36,202	1,031		34,468
	흑자법인	606	56.6%	51,483	557	54.0%	49,754
	적자법인	475	43.4%	△15,281	474	46.0%	△15,286
지방독립 행정법인	합계	83		38,911	94		27,264
	흑자법인	72	86.7%	40,290	84	89.4%	28,588
	적자법인	11	13.3%	△1,379	10	10.6%	△1,323
합 계	합계	7,187		173,592	7,041		181,321
	흑자법인	4,355	60.6%	274,533	4,196	59.6%	287,120
	적자법인	2,832	39.4%	△100,941	2,845	40.4%	△105,799

자료: 일본 총무성. (2012. 12). 제3섹타의 현황에 관한 조사결과

이상에서 보면 2012년 현재 일본의 총 법인 수 8,308개 중 제3섹터가 7,181개로 86.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총 법인 수는 2003년도 10,111개에서 2012년도 8,308개로 1,803개가 감소하였으며, 이 중 제3섹터는 8,457개에서 7,181개로 1,276개가 감소하였다. 또한 2012년도 제3섹터의 업무분야별 법인 수는 지역・도시개발이 가장 많은 1,430법인(17.2%)이고, 다음으로 농림수산 1,279법인(15.4%), 관광・레져 1,204법인(14.5%)의 순이다. 그리고 2012년 현재 제3섹터에 대한 출자액은 4조 1111억엔으로 이는 출자총액 6조 5,040억엔의 69.8%이다. 마지막으로 2012년 경영현황은 전체 7,041개 법인 가운데 흑자법인은 4,196(59.6%), 적자법인은 2,845개(40.4%)에 달한다. 제3섹터는 5,916개 법인 중 흑자법인이 3,555개 60.1%이며, 적자법인이 2,361개 39,9%이다.

Ⅴ. 일본의 제3섹터 개혁추진 현황과 방향

1. 최근 일본의 제3섹터 개혁추진 현황

2013년 4월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제3섹터의 경영상황'에 따르면 전국에 7,041개 법인이 있으며, 이 중 제3섹터 5,916개, 지방3공사 1,031개, 지방독립행정법인 94개로

나타났다.

전국에 7,041개 법인 중 40.4%에 해당하는 2,845개 법인이 2012년 3월말 현재 적자를 보이고 있다.[7]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제3섹터의 적자 증가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먼저 2007년 1월 지방행재정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채무조정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가 만들어 졌다. 이 위원회는 개혁을 위한 채무조정과 제3섹터의 자금조달에 대한 과제를 포함한 지방분권 개혁에 대한 검토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또한 2007년 10월에 '제3섹터의 자금조달에 관한 손실보상법' 을 정리하고, 제3섹터 개혁에 대해 지역별로 재생기구의 활용을 포함한 총무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3섹터의 경영상황과 손실보상계약의 내용에 따른 '손실보상채무잔고'의 일정 비율을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장래부담액'에 산입하는 조치가 내려 졌다. 이후 2008년 6월에는 '경제재정 개혁의 기본방침 2008' 에 따라 경영 악화가 명백한 제3섹터의 경영개혁을 공표하였다. 이 처럼 제3섹터의 존폐를 포함한 지속적인 개혁과 함께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지표가 공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3섹터와 관련된 장래부담액이 명시되었고, 그 지표에 따라 재정건전화 계획의 책정이 의무화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상 또는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제3섹터나 지방3공사 등이 파탄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을 독촉 받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총무성은 2009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본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경영 파탄 시 손실보상이나 채무보증, 단기대부금의 합계액이 재정규모의 약 10%를 넘으면 '재정 건전화 단계', 그리고 20% 이상은 '재정 재생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는 2007년 6월에 시행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8]에 규정된 '건전화 판단비율'에 따라 기준을 정한 것이다.[9]

---

7) 일본 총무성. (2013.4.13). 제3섹터 등의 상황에 관한 조사 결과

8)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지방공공단체재정건전화법)은 지방공공단체의 재정 건전화에 관한 비율에 대한 공표제도를 만들어, 해당 비율에 따라 지방공공단체가 재정의 재생과 공기업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 진 제도이다. 2007년 6월 입법화되었으며, 2009년 4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9) 일본 총무성. (2013.4.13). 제3섹터 등의 상황에 관한 조사 결과

〈표 9〉 최근의 일본 제3섹터 개혁추진 내용

연도	개혁추진 사항	내 용
2007년 1월	채무조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	개혁을 위한 채무조정과 제3섹터의 자금조달에 관한 과제를 포함한 지방분권 개혁에 대한 검토
2007년 6월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제정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비율에 따라 지방공공단체가 재정의 재생과 공기업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
2007년 10월	제3섹터 등의 자금조달에 관한 손실보상 방법 명시	제3섹터 등의 '손실보상채무잔고'의 일정 비율을 '지방공공단체의 재정 건전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장래부담액'에 산입하는 조치
2008년 6월	경제재정 개혁의 기본방침 2008	경영 악화가 명백한 제3섹터의 경영개혁 추진
2008년 12월	제3섹터, 지방공사 및 공영기업의 근본개혁의 추진에 관한 보고서	지방재정법 개정과 2009년~2013년까지 5년간 집중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3섹터채' 발행
2009년 4월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본격적으로 시행	경영 파탄 시 손실보상이나 채무보증, 단기대부금의 합계액이 재정규모의 10%를 넘으면 '재정건전화 단계', 20% 이상은 '재정재생단계'로 구분하여 '재정건전화 판단 비율' 적용

자료: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에서 재작성

한편, 총무성이 설치한 '채무조정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 가 2008년 12월 5일 발표한 '제3섹터, 지방공사 및 공영기업[10]의 근본개혁의 추진에 관한 보고서' 에서는 제3섹터 등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무성이 실효성 있는 지침을 책정하고, 나아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2009년~2013년까지 5년간 집중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3섹터채[11]'의 발행이 시작되었다. 이 '제3섹터채'는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제3섹터 등의 폐지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여 개혁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공공단체의 재정 건전화에 관한 법률'의 전면시행을 계기로 채무의 근본적인 정리를 위해 만들었다. 이 '제3섹터채'는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의 하나이며, 제3섹터 등의 정리 또는 재생에 필요한 경비에 활용된다.[12]

10) 지방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인 수도사업, 교통사업, 병원사업, 하수도사업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일본어로는 '三セク債'로 표현하며, 지방공공단체가 '지방공공단체 재정건전화법'의 전면시행부터 5년간(2009~2013년) 지방공영기업, 지방공사, 제3섹터 등의 근본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특별지방채로서 지방공영기업, 지방공사, 제3섹터의 정리(폐지・해산・사업재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것이다.

12) 江夏あかね.(2013). 제3섹터 등의 근본적 개혁과 그 의의, 野村資本市場クォータリー, Spring.

〈표 10〉 제3섹터 등의 개혁추진채의 개요

항목	개요
대상경비	제3섹터 등의 정리 또는 재생에 따라 부담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경비 1. 제3섹터 및 지방주택공급공사 →지방공공단체가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 법인의 법적정리를 할 경우에 필요한 해당 손실보상에 필요한 경비(단기대여금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포함) (1)법적정리: 파산절차, 특별청구절차, 재생절차 및 갱신절차 (2)사적정리: 일반에 공표된 채무처리를 위한 준칙 등이 해당 2. 토지개발공사 및 지방도로공사 →공사의 해산 또는 불채산사업을 폐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방공공단체가 채무보증 등을 하고 있는 공사차임금의 상환에 필요한 경비(단기대여금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포함) 3.공영기업 →공영기업의 폐지(특별회계의 폐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이하의 경비 • 시설 및 설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경비 • 지방채의 조기상환에 필요한 경비 • 일시차입금의 상환에 필요한 경비 • 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 • 공영기업형법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과 기타 재산의 출연에 필요한 경비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부담금 등의 반환에 필요한 경비
대상기간	2009년~2013년도 (일정기간 내에 집중적인 개혁 추진)
발행절차	의회의 의결 → 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 허가
충당률	100%
상환연한	10년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여 상환연한 설정가능
재원조치	지불이자의 일부에 대해 필요할 경우 특별교부세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

자료: 일본 총무성. (2013). 제3섹터 등의 개혁추진채의 개요. (지방재정법 부칙 제33조 5의7) 1항

2.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 제도 도입

1)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의 개요

일본의 경우 심각한 재정악화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황을 획일화된 지표로 밝히고, 재정건전화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을 2009년 4월 전면 시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정촌, 특별구)는 매년 건전화 판단비율을 감사위원에게 심사를 받은 후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건전화 판단비율인 실질적자비율, 연결실질적자비율, 실질공채비용비율, 장래부담비율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건전화 판단비율 중 조기 건전화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정 건전화계획을 세워야 하며, 재정 재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정 재생계획을 세워야 한다.

먼저, 건전화 판단비율 중 하나가 조기 건전화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정 건전화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 재정 건전화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공표한다. 재정 건전화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그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한다. 또한 이 내용은 총무대신과 도도부현 지사에 보고하고, 총무대신과 도도부현 지사는 이에 대한 공표가 의무화 되어 있다. 이 재정 건전화계획의 진행 결과에 따른 재정의 조기 건전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총무대신과 도도부현 지사는 이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에서 기술한 건전화 판단비율 중 하나가 재정 재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정 재생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재정 재생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공표한다. 이 재정 재생계획은 총무대신과 협의할 수 있으며, 재정 재생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매년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한다. 또한 그 내용은 총무대신에게 보고하고, 총무대신에 의한 공표가 의무화 되어 있다.

한편, 공영기업을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영기업마다 자금부족비율을 감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 후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한다. 이것이 경영 건전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영 건전화계획을 결정해야 하며, 이 경영 건전화계획의 수립절차는 '재정 건전화계획의 수립절차'와 동일하다.

〈표 11〉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건전화법
정식명칭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도입연도	2007년
재정건전화의 구조	재정재생기준의 전 단계로서 조기건전화기준을 만들고, 자주적인 개선노력에 의한 재정의 조기건전화를 촉구함
대상이 되는 회계	공사・제3섹터의 부채와 적자에 대해 명확히 하고, 지방공공단체 재정의 전체상을 부각시킴
재정상황을 판단하는 방법	공사・제3섹터 등을 포함한 실질적 부채에 의한 스톳 지표인 장래부담비율을 도입
정보공시	감사위원의 심사・의회보고・주민에게 공표를 의무화하고, 정보공시를 철저히 함
공영기업의 경영 관련	자금부족비율을 활용하여 경영건전화의 구조를 도모함

자료: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에서 재작성

2)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 제도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에서 건전화 판단비율 등의 대상이 되는 회계는 다음과 같다. 건전화법은 공립병원이나 하수도 등의 공기업 적자, 지방공사 및 제3섹

터의 부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전체상황을 밝혀야 한다.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정촌, 특별구)의 재정상황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재정의 조기 건전화와 재생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4가지 재정지표를 '건전화 판단비율'로 정하고 있다.

첫째, 실질적자비율이다. 실질적자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회계인 '일반회계' 등으로 발생하는 적자의 크기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일반회계 등의 실질적자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보통회계에 상당하는 회계에 있어 실질적자액이다.

$$◎ \text{ 실질적자 비율} = \frac{\text{일반회계 등의 실질적자액}}{\text{표준재정규모}}$$

둘째, 연결실질적자비율이다. 연결실질적자비율은 공립병원이나 하수도 등 공기업을 포함한'지방공공단체의 모든 회계'에 발생한 적자의 크기를 재정규모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text{연결실질적자비율} = \frac{\text{연결실질적자액}}{\text{표준재정규모}}$$

셋째, 실질공채비비율이다. 실질공채비비율은 지방공공단체의 차입금(지방채)의 상환액(공채비용)의 크기를 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규모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준원리상환금은 다음의 5가지에 해당된다. 첫번째, 만기일괄상환 지방채에 대해 상환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원금균등 연부상환으로 한 경우에는 1년에 해당하는 원금상환금 상당액이다. 두번째,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이외의 특별회계로의 조출금(繰出金)[13] 중 공영기업채의 상환재원에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세번째, 조합・지방개발사업단의 부담금・보조금 중 이들이 발행한 지방채상환의 채무부담행위에 기초한 지출 중 공채비에 준하는 것이다. 네번째, 채무부담행위에 기초한 지출 중 공채비에 준하는 것이다. 다섯번째, 일시차입금의 이자이다.

---

13)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지출되는 경비. 지방공공단체의 일반회계부터 간병보험사업회계, 국민건강보험사업회계, 지방공영기업회계 등에 대해 지출되는 부담금

$$◎실질공채비비율 = \frac{지방채의\ 원리상환금\ +준원리상환금) - (특정재원+ 원리상환금·준원리상환금과\ 관계된\ 기준재정수요액산입액)}{표준재정규모 - (원리상환금·준원리상환금과\ 관계된\ 기준재정수요액산입액)}$$

넷째, 장래부담비율이다. 장래부담비율은 지방공공단체의 차입금(지방채) 등 현재 안고 있는 부채의 크기를 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규모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장래부담액은 아래의 8가지의 합계액이다. 첫 번째, 일반회계 등 해당연도의 전년도말까지 지방채현재고이다. 두 번째, 채무부담행위에 기초한 지출예상액(지방재정법 제5조 각호의 경비와 관계된 것)이다. 세 번째, 일반회계 이외에 지방채의 원금상환에 충족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이월예상액 이다. 네 번째, 해당 단체가 가입한 조합 등의 지방채 원금상환에 충족하는 해당 단체로부터의 부담 예상액이다. 다섯 번째, 퇴직수당 지급예정액(전 직원에 대한 기말 지급액) 중 일반회계 등의 부담예상액이다. 여섯 번째, 지방공공단체가 설립한 일정법인의 부채액, 그들을 위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 중 해당 법인 등의 재무·경영상황을 감안한 일반회계 등의 부담 예상액이다. 일곱 번째, 연결실질적자액이다. 여덟 번째, 조합 등 연결실질적자액 상당액 중 일반회계 등의 부담 예상액이다. 참고로 충당가능기금액은 위에서 기술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의 상환금에 충족 가능한 지방자치법 제241조의 기금을 말한다.

$$◎장래부담비율 = \frac{장래부담액 - (충당가능기금액\ +\ 특정재원예상액+ 지방채현재고와\ 관계된\ 기준재정수요액산입\ 예정액)}{표준재정규모 - (원리상환금·준원리상환금과\ 관계된\ 기준재정수요액산입액)}$$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년도 결산에 근거한 건전화 판단비율을 산정자료와 함께 감사위원의 심사에 붙여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한다. 또한 공영기업을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영기업마다 자금부족비율을 감사위원의 심사에 붙여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한다. 지방공공단체는 발표한 건전화 판단비율을 신속하게 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는 총무대신에게, 지정도시를 제외한 시정촌·특별구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도도부현 지사는 즉시 해당 건전화 판단비율을 총무대신에게 보고해야 한다. 도도부현 지사·총무대신은 매년 보고를 정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table>
<tr><td rowspan="4">지방공공단체</td><td>일반회계</td><td>일반회계 등</td><td rowspan="4">⇑실질적자비율⇓</td><td rowspan="4">⇑연결실질적자비율⇓</td><td rowspan="4">⇑실질공채비용비율⇓</td><td rowspan="4">⇑장래부담비율⇓</td><td rowspan="4"></td></tr>
<tr><td>특별회계</td><td rowspan="2">공영시업회계</td></tr>
<tr><td rowspan="2">특별회계 중 공영기업회계</td><td rowspan="2">⇑부채부족비율⇓</td></tr>
<tr><td></td></tr>
<tr><td colspan="2">일부사무조합・광역연합</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지방공사・제3섹타 등</td><td></td><td></td><td></td></tr>
</table>

자료: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림 1〉 재정건전화 판단비율의 대상

3) 조기 건전화 기준과 재정재생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화 판단비율(실질적자비율, 연결실질적자비율, 실질채권비용비율, 장래부담비율) 중 하나가 조기 건전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건전화 판단비율을 공표 한 연도의 말일까지 '재정 건전화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재생판단비율(실질적자비율, 연결실질적자비율, 실질채권비용비율) 중 하나가 재정재생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재생판단 비율을 공표한 연도의 말일까지 '재정재생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1) 조기 건전화 기준과 재정재생 기준

조기 건전화 기준은 실질적자비율, 연결실질적자비율, 실질채권비용비율, 장래부담비율에 정해져 있다. 또한 재정재생 기준은 실질적자비율, 연결실질적자비율, 실질채권비용비율에 정해져 있다. 첫째, 실질적자비율 이다. 조기 건전화 기준에 있어서 지방채 협의・허가제도에 있어 허가제 이행기준(시정촌(특별구를 포함. 이하 같음) 2.5%~10%, 도도부현 2.5%)과 재정재생기준의 중간 값으로 하고, 시정촌은 재정규모에 따라 11.25~15%, 도부현(도쿄도는 별도 설정. 이하 같음)은 3.75%이다. 재정재생기준은 재정규율을 확보하

는데 사실상 규범으로 정착된 구 재건법의 기채제한 기준을 사용하며, 시정촌은 20%, 도부현은 5%이다. 둘째, 연결실질적자비율 이다. 조기 건전화 기준에 있어서 실질적자비율의 조기 건전화 기준으로 공영기업회계 등에 있어 경영 건전화상황 등을 감안하여 5% 가산하고, 시정촌은 재정규모에 따라 16.25~20%, 도부현(도쿄도는 별도 설정)은 8.75%이다. 재정재생 기준은 조기 건전화 기준과 비슷한 관점에서 실질적자 비율의 재정재생 기준으로 10% 가산하고, 시정촌은 30%, 도부현은 15%이다. 또한 연결실질적자 비율은 건전화법으로 도입된 새로운 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에 큰 제약을 주는 재정재생 기준에 대해서는 3년간(2009년도~2011년도)의 경과기준(10~5% 인상)을 둔다. 셋째, 실질공채비용비율 이다. 조기 건전화 기준에 있어서 시정촌・도도부현 모두 지방채 협의・허가제도에 있어서 일반단독사업의 허가가 제한되는 기준이었던 25%이다. 재정재생 기준은 시정촌・도도부현 모두 지방채 협의・허가제도에 있어서 공공사업 등의 허가가 제한되는 기준이었던 35%로 되어 있다. 넷째, 장래부담비율 이다. 조기 건전화 기준에 있어서 실질공채비용비율의 조기 건전화 기준에 상당하는 장래부담액의 수준과 평균적인 지방채의 상환연수를 감안하여, 시정촌은 350%, 도도부현 및 정령시는 400%이다. 또한 장래부담비율은 재정재생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공영기업별 자금부족비율이다. 경영 건전화 기준(조기 건전화 기준에 해당하는 기준)은 지방채 협의・허가제도에 있어서 허가제 이행 기준을 감안하여 20%이다. 산정은 영업수익/연 5% 정도의 합리화 노력×4년의 이미지이다.

〈표 12〉 재정 건전화 판단비율

구분	조기건전화기준		재정재생기준	
	도도부현	시정촌	도도부현	시정촌
실질적자 비율	3.75%	11.25%~15%	5% 이상	20% 이상
연결실질적자 비율	8.75%	16.25%~20%	15% 이상	30% 이상
실질공채비용 비율	25%		35% 이상	
장래부담 비율	400%	350%	-	-

자료: 남황우.(2010). 일본 지방재정건전화 조치, 재방재정・세정연구

〈표 13〉 지방채 협의・허가제

실질공채비용 비율	지방채 발행 범위
35% 이상	기채제한 단체 (일반 공공사업 중 재해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 공영주택건설사업, 교육・복지시설 등 정비사업의 기채 제한)
25% 이상~ 35% 미만	기채제한 단체 (단독사업 등의 기채 제한)
18% 이상~ 25%미만	일반적 허가단체(공채비부담 적정화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일반적 기준에 따라 허가)
18% 미만	협의단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동의

자료: 남황우.(2010). 일본 지방재정건전화 조치, 재방재정・세정연구

(2) 재정 건전화 및 재생 절차

지방공공단체는 건전화 판단비율 중 하나가 조기 건전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건전화 판단비율을 공표한 연도의 말일까지 '재정 건전화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재정 건전화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신속하게 공표하고, 총무대신・도도부현 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실시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게 되어 있다. 계획의 책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외부감사 계약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총무대신은 각 도도부현 지사・지정도시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정리하고, 그 개요를 공표하여야 한다. 재정 건전화 계획의 실시상황을 감안하고, 재정의 조기 건전화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재생판단비율(건전화 판단비율 중 장래부담 비율을 제외한 3개 지표) 중 하나가 재정재생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재생판단 비율을 공표한 연도의 말일까지 '재정 재생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재정 재생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 재정 재생계획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재정 재생단체)는 매년 실시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총무대신은 각 도도부현 지사・지정도시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정리하여, 개요를 공표하여야한다. 재정 재생계획은 총무대신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재생판단 비율 중 하나가 재정재생 기준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재생계획에 총무대신의 동의를 얻은 경우가 아니면 재해복구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채 채권을 발행 할 수 없다. 재정 재생계획에 동의한 재정 재생단체는 수지부족액을 이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의 규정과 관계없이, 총무대신의 허가를 받아 상환연한의 재정 재생계획의 기간 내에 지방채(재생대체 특례채권)를 발행할 수 있다. 재정 재생단체의 재정운영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총무대신은 예산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생대체 특례채권기금에 관하여 국가는 배려하고, 재정 재생계획의 원활한 실시에 대해 국가 및 다른 지방공공단체는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공영기업을 경영하는 지방공공단체(조합 및 지방개발사업단 포함)는 매년 공영기업 회

계에 대해 자금부족비율(자금부족액의 사업규모에 대한 비율)을 감사위원의 심사 후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자금부족 비율이 경영 건전화 기준 이상이 된 경우에는 경영건전화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총무대신은 각 도도부현 지사・지정도시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정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3. 일본의 제3섹터 개혁방향

일본 제3섹터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처리책의 검토, 정보공시의 철저화에 의한 책임의 명확화, 의회의 관여를 통한 충분한 논의 및 처리책의 적절성 확인, 채무조정을 동반한 처리책, 남은 자산의 관리, 제3섹터채의 활용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 중 처리책의 검토는 제3섹터에 의해 제공된 재정・서비스의 경제적 성격을 포함한 사업의 의의, 채산성, 사업수법의 선택 등에 가능한 광범위하고 객관적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비용대비 효과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처리책의 검토 중 채산성 판단에는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 제3섹터의 장래부담비율의 손실보상채무에 관계된 일반회계의 부담예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표준평가방식으로 하여 손실보상채무로 평가되더라도 개별평가방식에서 산입비율이 30%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14]

〈표 14〉 공영기업・제3섹터의 근본적 개혁 방향

배경	• 지방공공단체가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 제3섹터와 관계된 채무는 장래에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지방공공단체 재정건전화법」의 전면시행 → 공영기업의 자금부족비율의 산정・공표, 경영건전화의 추진 → 제3섹터 등의 경영상태・지방공공단체의 장래부담비율 등의 파악・분석, 장래부담억제를 위한 해결의 추진
대응	• 공영기업, 제3섹터 근본개혁의 집중적 해결 촉진(2009년~2013년) ①처리책의 검토 → 사업의 의의・채산성・사업수법(민간수법 포함) 등의 검토, 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②정보공시의 철저(의회・주민) 가이드라인 활용, 새로운 손실보상은 하지 않음 → 경위, 수법의 최선이유, 손실보상이행의 필요성, 비용부담 ③의회의 관여 → ②의 논의, 처리책의 적절성 확인 ④채무조정을 동반한 처리책 → 절차・내용 등의 투명성 확보, 법적정리와 사적정리 가이드라인 활용, 새로운 손실보상은 하지 않음 ⑤남은 자산의 관리 등 ⑥지방채의 특례 (제3섹터 개혁추진채)의 활용

자료: 江夏あかね.(2013). 제3섹터 등의 근본적 개혁과 그 의의, 野村資本市場クォータリー. Spring.

14) 江夏あかね, '제3섹터 등의 근본적 개혁과 그 의의', 野村資本市場クォータリー, Spring, 2013

한편, 제3섹터 등의 개혁에는 각 사업수법(직영, 공영기업, 제3섹터, 상하분리방식(포함한 지정관리자제도), 민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공영기업은 사업의 필요성・채산성에 따라 개혁을 진행한다. 경영건전화를 도모하면서 경영개혁은 계속하고, 민영화, 민간양도・위탁, 독립법인화, PFI, 지정관리자 등을 통하여 사업을 지속한다.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종료시키고 공영기업회계를 폐지(원칙적으로 제3섹터채의 활용가능)한다. 신규사업은 억제하며 일정 기준미만 규모의 사업에 한해서 지방채 발행에 동의 또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둘째, 제3섹터의 경우 사업의 행정목적과의 일치도・채산성에 따라 개혁을 진행한다. 경영책임의 명확화와 운영개선을 한 뒤에 경영을 계속하며, 지방공공단체는 손실보상 뿐만 아니라 별도의 방안을 찾아 자금조달을 해야 하며, 프로젝트파이낸스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사업의 재생은 채무조달과 경영체제 변경을 한 뒤에 경영을 계속(제3섹터채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도)한다. 민영화・민간매각 등은 완전민영화・민간매각・상하분리방식의 운영(제3섹터채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도)으로 진행한다. 사업을 정산하는 경우 사업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방법으로 폐지・해산・파산 등(제3섹터채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도)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고로 제3섹터의 지도 감독위한 방법에는 경영상황의 파악, 감사, 정기점검, 의회 보고 및 주민에게 정보공개, 경영책임의 명확화와 운영체제, 공적지원, 자금의 관리운영 등이 있다.

〈표 15〉 공영기업・제3섹터의 근본적 개혁 수단

공영기업	• 사업의 필요성・채산성에 따라 근본적 개혁 검토 • 관광시설사업 • 택지조성사업	• 경영개혁 → 경영건전화를 진행하면서 경영계속 • 민영화 등을 추진하면서 사업계속 → 민영화, 민간양도・위탁, 독법화, PFI, 지정관리자 등(제3섹터채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 폐지(사업의 종료) → 사업을 종료시키고 공영기업회계를 폐지(원칙적으로 제3섹터채의 활용가능) • 신규사업의 억제 → 일정 기준미만 규모의 사업에 한해 지방채의 발행에 대해 동의 또는 허가
제3섹터	사업의 행정목적과의 일치도・채산성에 따라 근본적 개혁 검토	• 경영개혁 → 경영책임의 명확화와 운영개선 후에 경영계속 → 지방공공단체는 손실보상 뿐만 아니라, 별도의 수단으로 자금조달을 해야 함 → 프로젝트파이낸스를 활용한 자금조달 • 사업의 재생→채무조달과 경영체제 변경 등을 한 후에 경영계속(제3섹터채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 민영화・민간매각 등 → 완전민영화・민간매각・상하분리방식의 운영(제3섹터채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 사업의 정산 → 사업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형태로 폐지・해산・파산 등 (제3섹터채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자료: 일본 총무성.(2013). 공영기업・제3섹터 등의 근본적 개혁, 제5항

Ⅵ. 일본 제3섹터 개혁의 시사점

2012년도 일본의 제3섹터 경영현황에서 나타났듯이 전체 7,041개 법인 가운데 흑자법인은 59.6%인 4,196개, 적자법인은 40.4%인 2,845개 이다. 그 중 제3섹터는 5,916개 법인인데, 흑자법인이 60.1%인 3,555개, 적자법인이 39,9%인 2,361개이다. 결론적으로 전체 법인 중 40% 정도가 적자법인이고, 제3섹터 법인 중에도 40%가 적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제3섹터의 적자 증가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의 제3섹터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제3섹터 중 40%에 해당하는 적자법인을 업무분야별로 보면, 국제교류가 가장 높은 60.4%, 그 다음이 지역・도시개발 43.9%, 공해・자연환경 보전 42.6%, 관광・레저 41.9%, 교육・문화 41.7%의 순이다. 반면, 흑자법인은 정보처리 78.2%로 가장 높고, 다음이 주택・도시 서비스 67.8%이다. 일본의 제3섹터 적자법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우리나라에서는 적자비율이 높은 국제교류, 지역・도시개발, 공해・자연환경 보전, 관광・레저, 교육・문화 등의 업무분야에 대한 제3섹터 법인의 설립을 가능한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의 경우 제3섹터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상황을 획일화된 지표로 밝히고, 재정건전화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건전화 판단비율을 의회에 보고・공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건전화 판단비율 중 건전화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정 건전화계획 또는 재정 재생계획을 세워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정상황을 획일화된 지표로 밝힐 수 있는 '재정건전화 판단비율' 같은 기준을 만들어 공표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치단체는 '재정 건전화계획' 또는 '재정 재생계획'을 세우게 하여 재정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일본의 경우 제3섹터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처리책의 검토, 정보공시의 철저화에 의한 책임의 명확화, 의회의 관여를 통한 충분한 논의 및 처리책의 적절성 확인, 채무조정을 동반한 처리책, 남은 자산의 관리, 제3섹터채의 활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제3섹터의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영기업과 제3섹터로 구분하여 각 상황별로 개혁 추진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즉, 공영기업은 사업의 필요성・채산성에 따라 개혁을 진행하고, 경영건전화를 도모하면서 민영화, 민간양도・위탁, 독립법인화, PFI, 지정관리자 등을 통하여 사업을 지속한다.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사업을 종료시키고 공영기업회계를 폐지하며, 신규 사업은 억제하며 일정 기준미만 규모의 사업에 한해서

지방채 발행을 동의 또는 허가를 한다. 또한 제3섹터의 경우 사업의 행정목적과의 일치도・채산성에 따라 개혁을 진행하고, 경영책임의 명확화와 운영개선을 한 뒤에 경영을 계속한다. 지방공공단체는 손실보상 뿐만 아니라 별도의 방법을 찾아 자금조달을 해야 하며, 프로젝트파이낸스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사업의 재생은 채무조달과 경영체제 변경을 한 뒤에 경영을 계속한다. 민영화・민간매각 등은 완전민영화・민간매각・상하분리 방식으로 진행하며, 사업을 정산하는 경우 사업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폐지・해산・파산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상에서 일본에서는 제3섹터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갈수록 증가하는 제3섹터의 경영 악화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며, 적자가 더 이상 누적이 되지 않도록 제3섹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3섹터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3섹터의 경영악화가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고, 결국에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성. (2003). 제3섹터의 구성범위에 관한 미・유럽에서의 논의 비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0권: 325-345

노대명. (2010).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황우. (2010). 일본 지방재정 건전화 조치, 재방재정・세정연구

유훈 외. (2010). 「공기업론」. 법문사.

이명수. (2012). 한국지방자치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제13권 제4호, 통권37호,

이성복. (1995). 제3섹터 제도. 「지방행정」. 12월호. 제110권.

이종수. (2009년).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여영현 외. 2010년. 제3섹터 운영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회보」. 제14권 제1호: 173-193

안용식・원구환. (2000). 「지방공기업론」. 대영문화사.

일본 총무성. (2013). 제3섹터 등의 상황에 관한 조사 결과.

일본 총무성. (2012). 제3섹타의 현황에 관한 조사결과.

일본 총무성. (2013). 제3섹터 등의 개혁추진채의 개요. (지방재정법 부칙 제33조 5의7) 1항

일본 총무성. (2013). 공영기업・제3섹터 등의 근본적 개혁, 제5항

赤井伸郎. (2003). 제3섹터의 경영악화의 요인분석, 내각부경제사회총합연구소, 「ESRI Discussion Paper Series」 No32.

高寄昇三. (1991). 「외곽단체의 경영」. 學陽書房.

江夏あかね. (2013). 제3섹터 등의 근본적 개혁과 그 의의,「野村資本市場クォータリー」. Spring.
丸山康人. (2006). 일본의 지방자치와 제3섹터, 四日市大學,
深澤映司. (2005). 제3섹터의 경영악화요인과 지역경제, 레프런스, Theodore Levitt.「The Third Sector」. New Tactics for a Responsive Society. 1973.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http://www.soumu.go.jp/)

접수일(2013년 10월 30일)
수정일자(2013년 11월 21일)
게재확정일(2013년 11월 29일)